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50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락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정인식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12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136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를 ‘제1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 D(피고 B의 남편이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억 2,000만원 : 2016. 1. 20.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2016. 2. 22. 잔금 3억 7,000만 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또한 2016. 2. 4. 피고 B의 모친인 E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를 ‘제2매매’라 하고, 제1, 2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와 E의 대리인 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 2016. 2. 4. 계약금 2억 5,000만 원 지급, 같은 날 잔금 1억 2,000만 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잔대금 1억 2,000만 원 중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대출채무금 1억 2,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이에 잔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면서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29. 피고 C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또한 2016. 2. 26. E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면서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그 후 피고 B, E은 대리인 D1) 을 통해 2016. 2. 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제2부동산 건물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제1부동산 토지 600평의 허가 후 매매 전후에 주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1부동산 토지 600평의 허가 후 전원주택을 지은 후에 땅값을 평당 60만 원으로 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8. 26. 피고들과 E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의 뜻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6. 8. 30. 피고 B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2350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2017. 9. 14. 판결선고)>

○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피고 B과 E을 대리한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D과 피고 B, E은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D과 피고 B, E의 위와 같은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는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과 E은 원인 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1심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이유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D, 피고 B, E 사이에 원

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91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2018. 8. 29. 판결선고)>

○ 원고 청구의 요지(항소심에서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추가하였다)

- 말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와 E의 대리인인 D로부터 ‘자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자신들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개발이익까지 반영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 B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근저당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제1부동산의 건축허가 이후 정산 지급한다’는 합의 하에 제1매매계약을, E와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2,000만 원은 근저당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제1부동산의 건축허가 및 전원주택 축조 이후 정산 지급한다’는 합의 하에 제2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직후 피고 B와 E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B와 E은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위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E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상 채무의 불이행, 즉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할 의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E은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와 E, D은 건축허가절차 진행 및 매매대금 지급, 근저당

채무 인수 등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은 나머지 피고 B,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E, D의 위와 같은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E은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C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대상청구 부분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원고의 각 말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장차 집행불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에 대비한 대상청구로서,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3억 6,000만 원(제1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 근저당채무 6,000만 원) 상당의, E에 대하여는 2억 1,600만 원(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 3억 3,600만 원 - 근저당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각 전보배상을 구한다.

○ 항소심 판단 :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전부 기각

○ 이유의 요지

-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은 '제1부동산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대납할 의무 및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및 전원주택 축조 이후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은 '제2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 및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 매매 전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라고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제에 앞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말소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피고 B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말소 청구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대상청구 부분

원고의 각 말소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대상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상고심 : 대법원 2018다268446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8. 12. 2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 2018. 12. 31. 확정

사. 원고는 피고들과 E,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2. 28.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형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은 ‘제1부동산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대납할 의무 및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및 전원주택 축조 이후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은 ‘제2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 및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 매매 전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이다. 그런데 피고 B과 E, D은 선형소송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허위문서로 무효이므로 피고 B과 E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제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자인 피고 B이 대금지급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 B에게 이행거절을 이유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제1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제1부동산은 현재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임의경매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이 불능이 되거나 또는 판결 확정 후에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는 위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인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의 하나인 이행거절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총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이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과 E, D은 선행소송의 1심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일부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지급시기 등을 주로 다투다가 선행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심에 제출한 2018. 3.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매수인인 피고 B과 E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며, 이 사건 지불각서는 D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피고 B와 E의 대리인인 D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현실로 지급할 대금은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의미 없는 문서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가 D에게 피고 B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제1부동산 근저당채무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점, E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제2부동산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B이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와 E이 선행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의사표명이나 소송상 주장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B와 E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의사표명이나 소송상 주장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선행소송의 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반면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와 E의 매수인으로서의 채무를 정한 처분문서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주장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선행소송의 1심과 항소심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판단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피고 B와 E의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피고 B와 E의 채무는 선행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었다.

② 피고 B와 E이 선행소송의 1심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일부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선행소송의 1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과 E의 채무가 불확정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소송을 제기하므로 피고 B과 E으로서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과 E의 항소심에서의 위 주장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장차 매수인인 피고 B과 E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용부담 아래 제1부동산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케 한 후 그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과 E의 대금지급의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와 달리 위와 같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B과 E이 선행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채무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과 E의 채무가 선행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비로소 구체화되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 B과 E이 한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채무를 다투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을 명백하게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 B과 E이 선행소송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채무가 앞서 본 내용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B과 E이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을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종국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E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무나 근저당권을 인수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B과 E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피고 B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나아가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 B와 E은 원고가 선행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제1부동산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 등으로 합계 2,935,881원을 대납하고, 그와 더불어 2016년 3월경 G은행 광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제2부동산 근저당채무의 인수를 시도하였으며(제2부동산에 가압류 2건이 존재하는 등으로 인수가 거절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직후 피고 C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제1부동산의 개발자금을 조달하는가 하면, 선행소송의 제기 전후로도 제1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준비행위 및 개발행위를 계속 진행 중이었던바, 피고 B고 E이 자신들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다거나, 그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지현, 판사 이준석, 판사 강수희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광주시

임야 1983㎡

2. 위 부동산에 설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
13648호 채무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경료된 근저당권. 끝.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광진구 아파트[도로명 주소] 서울 광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08.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 광진구 대 737.2㎡

대지권의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737.2분의 45.67

2. 서울 광진구 아파트[도로명 주소] 서울 광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65.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 광진구 대 737.2㎡

대지권의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737.2분의 27.63 ㄱ.

1) 이 사건 각 매매 전반에 관하여 파고 B과 E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